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	3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	3
신청기간	3
지원대상	3
지원항목	3
지원신청	4
지원서류	4
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

① 신청기간

- 연중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
② 지원대상

- 주민등록상 강진군 거주자
-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
종류	근거	내용	선정기준
응급입원	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	자.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	전 국민
행정입원	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	자.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	
외래치료지원	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	자.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 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	
발병초기정신질환	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	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29), 기분(정동)장애(f30~39) 일부'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	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③ 지원항목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: 본인일부부담금*,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
 - *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제외
 - 차상위 계층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
- 건강보험 가입자
 - 응급입원,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
 -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환자의 소득·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,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
 -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,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가능
- 외국인
 - 건강보험(또는 의료급여)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
 -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: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, 외국 국적자, 재외국민, 국적상실,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 가능
 - 발병초기 정신질환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로,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한 자

◎ 지원신청

-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(사전 전화 문의)

◎ 지원서류

1. 제출: 환자 또는 보호자

2. 공통사항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- *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: 의료보험납입 증명서, 외국인등록증
 - 소득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
 - 치료비 지급 받으실 통장 또는 통장 사본
-

3.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
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
-

4.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
 -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(최초 진단 연도 명시)
 - *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요
-

※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

GANGJIN

Web Contents

